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57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박찬대 · 노종면 · 김우영

홍기원 · 조계원 · 박 정

윤종균 · 박주민 · 박홍배

김상옥 · 전진숙 · 이강일

송재봉 · 서미화 · 장철민

박성준 · 이견태 · 유동수

김승원 · 맹성규 · 김용민

김태선 · 신정훈 · 이병진

이재관 · 이광희 · 소병훈

황명선 · 박희승 · 김주영

염태영 · 안태준 · 박정현

권칠승 · 조인철 · 이상식

이연희 · 김기표 · 양부남

김교홍 · 박지혜 · 김남희

장종태 · 허종식 · 남인순

이해민 · 이용우 · 안호영

정준호 · 이정문 · 박은정

정청래 · 김문수 · 백승아

김용만 · 어기구 · 이용선

정진욱 · 김윤덕 · 박선원

부승찬 · 진성준 · 김영호

정춘생 · 김병주 · 조승래
박민규 · 박지원 · 모경중
전용기 · 박홍근 · 복기왕
한창민 · 서삼석 · 송기현
김정호 · 이재강 · 민병덕
천준호 · 임미애 · 임광현
이훈기 · 정일영 · 안도걸
송옥주 · 전현희 · 이정현
임호선 · 허영 · 서왕진
정을호 · 최혁진 · 추미애
이수진 · 한준호 · 김한규
문대림 · 민홍철 · 허성무
손명수 · 박균택 · 김준혁
정태호 · 김영배 · 김동아
김윤 · 김현 · 김현정
김병기 · 문금주 · 민형배
김남근 · 김원이 · 이해식
위성곤 의원(115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음. 본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

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계엄 반대에 나선 국민에 대한 예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및 징계의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함(안 제3조).

다.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

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

의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고, 1

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

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자.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

26조).

차. 제보자는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

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카. 국가는 제보자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 국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을 임기 종료일로 간주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봄(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3 비상계엄”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에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 조치를 말한다.
2. “제보자등”이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신고·진정·제보 등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3. “부당 인사”란 2024년 12월 3일 이후 2025년 5월 10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명, 전보, 승진, 연임, 재신임 등의 인사행위를 말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란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사법행정 자문기관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판사회의를

말한다.

제2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제3조(대상사건) 이 법의 적용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의혹사건(비상계엄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촉발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
2.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3.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건
4. 법원의 체포·구속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건
5. 군, 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과 구성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

6.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또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인사 등에 대한 체포, 납치, 감금 또는 고문 등을 모의하고 실행을 준비한 행위
 7. 국가 간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사건
 8.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옹호 및 비호하기 위하여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
 9.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후원을 유도하여 금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품을 사용함에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형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행위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사실 및 증거를 축소·은폐·증거인멸 또는 사건 관련자의 도주·은닉에 관련된 행위
 11.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 사건
- 제4조(법관의 제척)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영장청구와 전속관할

제6조(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7조(특별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특별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1명 이상을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3절 제1심 공판절차

제8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제1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②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9조(재판관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0조(재판의 이관) ①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1심 진행중인 경우 해당 재판은 제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 이관의 경우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재판부의 의사표시)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참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 및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제2심 공판절차

제15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②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

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6조(재판관할 및 재판의 이관) 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2심 진행중인 경우 해당 재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판부로 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판 이관의 경우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는 항소심에 준용한다.

제5절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특별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가 추천한 3명(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각 교섭단체, 그리고 의석수가 가장 많
은 비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2.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3.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1심은 대상사건이 기소된 날부터, 제2심은 제1심
판결선고에 대하여 항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한다.

⑦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
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⑧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추
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각 3명의 판사를 임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판사회의) ①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특별재판부후보자의 추천 등)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그 밖에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추천된 사람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추천한다.

제6절 판결 이후의 형사상 특례

제25조(사면 및 감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면법」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
2.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

제26조(작량감경의 배제) 제25조 각 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

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제보자등은 정보 제공 또는 제공 의사로 인하여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제보자 보호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보자등이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또는 진술로 수사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관계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재판부는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의 후속조치 및 역사적 책무

제28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제보자등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며,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부당 인사행위의 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인사 조치가 계엄 또는 내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의 방해, 증거의 인멸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명된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명행위

2. 2024년 12월 15일 이후의 모든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

② 같은 기간에 임명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의 재직기간 만료일로 본다.

제30조(기념사업의 실시) ① 국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항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의 민주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하여 목석 설치 등의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민주주의 교육 활용) ① 국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헌정수호의 과정을 자유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 중요한 민주적 항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정과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등 공공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한 교육자료의 개발, 교과서 수록, 전시 및 체험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내란 및 외환의 죄 범죄인 소속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 ①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의 기준, 절차, 반환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특별재판부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특별재판부가 아닌 법원 또는 재판부에 계

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특별재판부에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우선효력)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